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2023 · 3 · 3 의회규칙 제3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업무추진비"란 이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회 위원 장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 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.
 - 2. "의원"이란 이천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.
 - 3. "회계관계공무원"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- 제3조(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)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「공직선거법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,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제64조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업무추진비 사용제한)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할 수 없다.
 - 1.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
 - 2. 심야시간(23시 이후), 휴일,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. 다만,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3. 친목회, 동우·동호회, 시민·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
 - 4.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

-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 - 5.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
- 제5조(예산집행 자료 작성)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 준」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(신용카드, 현금 등)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정보공개 범위)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,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의장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